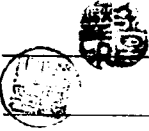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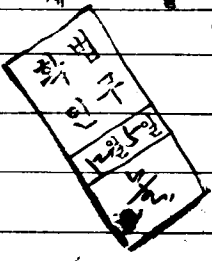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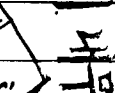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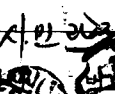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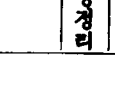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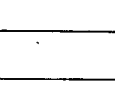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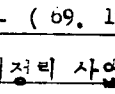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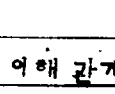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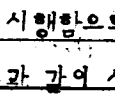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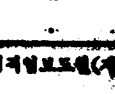




공 고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432.4	(전화번호 342)	진결규정 4 조 5 호 국 장 권결사항
처리기한		기 안 자	결 제 자
시행일자	1969.12.5	김익진	도시계획국장 추청
보존년한		기 안 일 자	결 제 일 자
		69. 12. 3.	
보 조 기 관	구획정리과장 계획계장	  공고제2/호             	
형 조	한지계장	정지	도시계획국장 추청
경 수 관	유 신 조	각 . 안 참 조	통 발 정 서
제 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변경 실시 공고		
제 1 안 내부 결재			
1. 서울시 공고 제 9 호 (69. 1. 24) 및 제 223 호 (69. 10. 7) 로 계획공고를 인포하고 건설부 장관에게 신청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변경 인가가 변경 내용과 같이 인가되었기,			
2. 당초 계획공고시 보다 변경 지시된 3 개 사항의 여해 관계인용 구분 (장안평 경지 정리지구와 언테천지 부근 제척지구) 하여 시행함으로써 보다 사업지구내의 계획을 상세히 전달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코			
져 합니다.			

1981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제2안 공로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9 호

제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변경 실시 공고

1. 서울시 공고 제 9 호 (69. 1. 24) 및 제 223 호 (69. 10. 27) 로 공고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 특히 계획공고시보다 지시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관계 서류를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총람에 공합니다.

3. 변경 개요

시 행 지	면 적	시 행 기 간
동작.반포. 잠원.서초.양재동 각 일부	3,126,229 평	68. 1. 18 - 74. 12. 31
양재.신사. 동작.반포.잠원. 서초.압구정.논현.역삼.포이.영곡 우민.도곡동 일부	4,723,776 평	68. 1. 18 - 74. 12. 31

4. 기타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9 조 참조

제 3 안 ¹⁹⁸¹ 서울특별시/랑

수신 수신처 참조 (입체코 차로 부근 제척하였던 소유자) 발신 시장

제목 동 권

1. 구획 492.4 - 122 (69. 1. 24) 로 통과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공고시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제척 계획으로 통보하고 인가 신청한바 있으나,

2. 후면 공고문과 같이 지시사항으로 면입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 리 아시기 바랍니다.

토지 목록

동 . 명 . 지 . 번 . 면 . 적 . 비 . 고 .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장안명 토지개발 조합 토지소유자) 발신 시 장
 제목 동 권

1. 구획 432.4 - 122 (69. 1. 24) 및 - 2327 (69. 10. 7)로 불
 보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변경 공고시 귀하의 토지를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신청하였던바,

2. 건설부 장관의 언가서 지시사항에 의하면 장안명 토지개발 조합과
 의 채무관계 (명당 125 원 44 전)가 청산된후 사업 집행하는 조건이 부가되
 었음으로,

3. 귀하께서는 장안명 토지개발 조합장과의 채무 이해관계 의견을 조
 속히 결정하여 주실것과 만일 별도의 의견이 없음시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
 행 할수 없음을 일버드리며 후면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목록

동	명	지	번	면	적	비	고

제 5 안

수신 장안명 토지개발 조합장 허시영 발신 시 장
 제목 이의 실행서 처리

1. 귀하가 당시에 이의 실행한 지토 1142 - 93 (69. 3. 15) - 456
 (69. 11. 7)에 대하여 별첨 사본 공문 내용과 같이 토지소유자와 조합과의
 채무관계가 청산된후 사업집행 하라는 내용으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 권리 토지소유자에게는 별첨 내용과 같이 통보하였기 토지소유자
 의사 표시를 받은 연후 결정함이 가항적으로 사로되므로 궤조함에서도 토지소
 유자에게 취미한 의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수: 건설부 공고문 사본.

조합 소유자 통보문 사본

제 6 안

수신 수신처 잡료 (토지대장 잡료)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서울시 공고 제 9 호 (69. 1. 24) 및 제 223 (69. 10. 7) 로
계획 공고한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후면 인가서와 같이 연가되었기 고
아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세로 (4 ㎡) 의 합장 공원용지 위치 변경등에 대하여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목록

동	병	지	번	면	적	비	고

제 7 안

수신 남부토지구획정리 사업소장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구획 (32.4 - 122 (69. 1. 24) - 2327 (69. 10. 7)) 로의 영
등토지구획정리 사업 인가가 결정 사본과 같이 연가되었기 일관 토지소유자
편입. 장안명등으로 구분 통보되었기 이의 내용을 받되 대민 봉사애 철저를
기침은 물론 7시반에 기시할것.

첨부. 사본 공문 4 건 각 1 부. 끝.

제 8 안

수신 공고실장 발신 과 장

제목 동 건

별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 하였음으로 시보 및 서울 뉴스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4 번 활. 별 시공.

서명 상성직업보도원(서공)